

EU의 환경규제 동향

경상용차 배기가스와 유해물질 규제 강화

EU의회, 경상용차에 대한 신규 CO₂배출규제법 승인

경상용차는 최대 3.5톤 이하인 물품운반용 차량(국제차량분류 N1 category)이면서 공차중량 2.610kg 이하인 차량을 의미한다. EU 전체의 경상용차(van) 평균 CO₂배출량(EU fleet average) 달성목표는 2017년 175g CO₂/km, 2020년 147g CO₂/km이다.

2014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각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 중 70%의 CO₂배출량이 km 당 175g 이하에 달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 100%의 모든 경상용차의 평균치가 175g CO₂/km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준달성에 실패할 경우, 자동차 제조회사는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2020년을 기해 모든 경상용차의 km당 CO₂배출량이 147g을 원칙으로 목표 미달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목표량 대비 초과 g/km 당 95유로가 부과된다.

금년 2월 15일 EU의회가 승인한 법안은 2009년 10월 28일에 집행위가 제안한 내용보다 완화된 것이다. 집행위는 2016년부터 경상용차의 평균 CO₂배출량을 175g CO₂/km으로 제안했었는데 EU 의회는 1년 연장하여 2017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연도별 이행율도 완화했다. 집행위가 제안한 연도별 경상용차(van)의 평균 CO₂배출량 이행율과 EU의회가 승인한 법규의 연도별 이행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 경상용차 CO₂ 배출 175g 이하차량 허용치

집행위 제안내용	2014	2015	2016	2017
	75%	80%	100%	-
EU의회 승인내용	2014	-	-	2017
	70%	-	-	100%

2020년을 기점으로 한 장기목표 수준도 완화했다. 집행위는 2020년에 135g CO₂/km 제안했었는데 반해 EU의회는 147g CO₂/km로 완화했고 배출량 초과 시 부과금도 집행위는 120 유로를 제안했는데 EU의회는 95유로로 인하여 결정하였다.

6개 화학물질 사용금지

EU는 인체 건강과 환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6개 위험물질(SVHC)¹⁾의 사용을 향후 3~5년 내로 전면 금지한다. 대체물질이 없거나 기술상의 문제로 특수 용도에 한해 사용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 기업은 사전에 유럽화학물질청(ECHA : European Chemicals Agency)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 화학물질은 발암성이 있거나 생식독성, 또는 해독성이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환

SVHC :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경에 남아있으며 생체에 누적되는 물질로서 SVHC 후보리스트에서 허가 대상의 물질로 확정된 것이다.

상기 물질은 원칙적으로 EU에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고 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이들 물질의 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완벽히 취했음을 증명하거나 또는 그 사용이 리스크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유리함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대체물질 또는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인 도입일정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사용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REACH 규정의 첫 성공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REACH Annex XIV(허가목록)에 추가될 6개 위험 물질 리스트

	화학물질	특성	과도기		예외적 사용
			허가신청 마감일	사용 만기일	
1	Musk Xylene	vPvB	2013.1.21	2014.7.21	—
2	MDA	발암성(카테고리 1B)	2013.1.21	2014.7.21	—
3	HBCDD	PBT	2014.1.21	2015.7.21	—
4	DEHP	생식독성(카테고리 1B)	2013.7.21	2015.1.21	약품 1차 용기포장에 사용
5	BBP	생식독성(카테고리 1B)	2013.7.21	2015.1.21	약품 1차 용기포장에 사용
6	DBP	생식독성(카테고리 1B)	2013.7.21	2015.1.21	약품 1차 용기포장에 사용

우유병에 비스페놀 A 사용금지

EU는 2011/8/EU지침(L26, 2011.1.29)을 통해 2011년 3월 1일부터 일명 비스페놀 A(Bisphenol A)라고 하는 2,2-bis(4-hydroxyphenyl) propane를 함유한 플라스틱제 우유병을 비롯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용기 제조를 금지했다.

2011년 6월 1일부터는 비스페놀 A를 함유한 폴리카보네이트 우유병을 비롯하여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용기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플라스틱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U는 지금까지 2002/72/EC 지침으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허용해 왔으나 이 물질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입증을 감안하여 금지를 결정한 것이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 플라스틱(POLYCARBONATE PLATIC) 제조 시 모노머(monomer)로 사용되는 화학제품이다.

2010년 3월 29일 덴마크 정부는 세이프가드 조치로 0~3세의 유아용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비스페놀 A의 임시적 사용 금지 결정을 EU집행위에 통고한데 이어 프랑스 정부와 함께 2010년 7월 6일에 여타 EU회원국 정부들도 7월 9일에 비스페놀 A가 함유된 우유병의 제조, 수입,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고 집행위에 통고한바 사실상 대부분의 EU회원국에서는 이미 금지된 상황이다.

비스페놀 A를 함유한 상점 영수증 종이도 사용 중단하는 경향이다. 프랑스의 다국적 유통그룹인 Carrefour는 최근(2011.2.1) 그룹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 비스페놀 A를 함유한 영수증 종이를 상품권을 철수하고 사용을 중단기로 결정했다. 